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4.



박종길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에는 기본이념을 정의하였고,
- 안 제18조에는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 기준을
- 안 제21조에는 평가결과 통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22조제4항에는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013
----------	---------

발의일자: 2020. 3. 23.

발의자: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이신자,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서민우, 박정환, 배용식, 이영빈, 안영란, 원종진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 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 신설(안 제2조)
- 나.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 기준 신설(안 제18조)
- 다. 평가결과 통보를 위한 절차 마련 (안 제21조)
- 라. 최종 평가결과 공개 신설(안 제22조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참조
-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2)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평가의 확정) ①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

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체 없이 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1조) 중 “제19조 및 제20조”를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기본이념)</u> 인간과 자연이 <u>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u> <u>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u> <u>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u> <u>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u> <u>다.</u>
<u>제2조 ~ 제5조 (생 략)</u>	<u>제3조 ~ 제6조 (현행 제2조부터</u> <u>제5조까지와 같음)</u>
<u>제6조 (생 략)</u>	<u>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u>
<u>제7조(평가계획) ① (생 략)</u>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u>제6조</u>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5. (생 략)	<u>제8조(평가계획) ① (현행과 같음)</u> ② ----- <u>제7조</u>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u> <u>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u> <u>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u> <u>실시하여야 한다.</u> ② 구청장은 <u>제5조</u>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 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 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	<u>제9조(평가의 실시) ① -----</u> -- <u>제7조 및 제8조</u> ----- ----- ----- ② ----- <u>제6조</u> ----- ----- ----- ----- ----- -----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 (생 략)

<신 설>

-----.

-----.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2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
-- 제12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평가의 확정) ①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 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
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
를 병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

제18조 (생 략)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
항)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
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
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 ① ----- 제22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구
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18
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
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
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p><u>한다.</u></p> <p>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체 없이 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u>제21조</u>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u>제19조 및 제20조</u>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u>제24조</u>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 ----- ----- <u>제22조 및 제23조</u> ----- ----- -----.
<u>제22조</u> · <u>제23조</u> (생 략)	<u>제25조</u> · <u>제26조</u>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 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현행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구의 청소업무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 (개정 2017. 11. 21)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자료 요구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현장평가를 할 때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11. 21)

1.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 의회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3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 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 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따 라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및 그 밖에 필요 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 및 제20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